

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1. 8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 촌 산 업 과)

1. 개정이유

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(법률 제 16783호 ‘19.12.10. 공포, 법률 제 18019호 ‘21.4.13. 공포)됨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운영주체로 추가됨에 따라 교육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·사업장폐쇄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·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(안 제49조2 개정)

- 교육일정 통지, 교육기록 보관(2년), 수료증 교부, 결과 보고(교육 후 1개월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) 등 교육 방법·절차 규정에 추가

나.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(안 제51조 관련 별표4 개정)

-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
- 성폭력처벌법, 성매매처벌법,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기준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2항 중 “법 제86조의2제2호”를 “법 제86조의2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49조의2제6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결과를 시·도지사”를 “결과(제5항 단서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	법 제89조제1항제4의2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 령		
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	--

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차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	법 제89조 제1항 제8호				
---	----------------	--	--	--	--

별표 4 제2호에 자목1)부터 자목3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5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		사업 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 령		
2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		사업 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 령		
3)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		사업 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 령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 교육 방법·절차 규정(안 제49조2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49조의2(서비스·안전기준 및 교육) ① (생략)	제49조의2(서비스·안전기준 및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86조의2제2호</u> 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, 소방·안전 교육 2시간, 서비스·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.	② <u>법 제86조의2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,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.	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
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,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	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은 제2	⑤ <u>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농</u>

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.
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-----

-----.다만,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-----

⑦ -----
---- 결과(제5항 단서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-----

-----.

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(안 [별표 4] 개정)

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(제51조 관련)

현행	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
1. (생략)		1.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
2. 개별기준		2. 개별기준																						
가. ~ 라.(생략)		가. ~ 라.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
마. <신설>		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령</th><th colspan="2">처분기준</th></tr><tr><th>1차</th><th>2차</th></tr><tr><td>마.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</td><td>법 제89조제1항제4의2</td><td>사업정지 3월</td><td>사업장 폐쇄명령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령	처분기준		1차	2차	마.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	법 제89조제1항제4의2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령	처분기준																						
		1차	2차																					
마.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	법 제89조제1항제4의2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																				
마. ~ 사.(생략)		바. ~ 아.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
자. <신설>		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령</th><th colspan="2">처분기준</th></tr><tr><th>1차</th><th>2차</th></tr><tr><td>자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</td><td>법 제89조 제1항 제8호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5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</td><td></td><td>사업정지 3월</td><td>사업장 폐쇄명령</td></tr><tr><td>2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</td><td></td><td>사업정지 3월</td><td>사업장 폐쇄명령</td></tr><tr><td>3)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</td><td></td><td>사업정지 3월</td><td>사업장 폐쇄명령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령	처분기준		1차	2차	자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	법 제89조 제1항 제8호			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5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	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2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	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3)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	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
위반행위	근거 법령	처분기준																						
		1차	2차																					
자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	법 제89조 제1항 제8호																							
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5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	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																				
2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	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																				
3)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		사업정지 3월	사업장 폐쇄명령																					
아. (생략)		차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